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토교통부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
에 필요한 인력 1명(6급 1명), 중동지역에 대한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
원 확대에 필요한 인력 2명(4급 또는 5급 1명, 6급 1명), 저상버스 등 특
별교통수단 관련 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6급 1명), 도심형
항공기의 형식증명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
및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등에 대한 규제특례 부여 여부 검토를 위하여
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을 각각 증원하고, 지방항공청에 신공항 건설
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(6급 2명) 및 드론 비행승인 업무에
필요한 인력 2명(7급 2명)을 각각 증원하며,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
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으로 에너지 분야 등의 국가 주요 기반시
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
시정원 1명(5급 1명)을 감축하는 한편,

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
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‘별정직공무원’에서
‘전문임기제공무원’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
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토교통부의 청년정책

전문인력 1명(별정직 6급 상당 1명)을 감축하고,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의 분장사무를 현행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2. 29. ~ 3. 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4호 중“항공기”를 “항공기·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”로 한다.

제59조제4항을 삭제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1,013”을 “1,018”로 하고, 별정직 계 “8”을 “7”로 하며,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“7”을 “6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,002”를 “1,008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973”을 “979”로 한다.

별표 3 중 총계 “2,538”을 “2,542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,538”을 “2,542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2,529”를 “2,533”으로 한다.

별표 6 제4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8조(직무)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. 1.~ 3. (생략) 4. <u>항공기 안전운항 및 안전성 확인</u> 5.~ 17. (생략)	제28조(직무) ----- -----. 1.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항공기 ·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</u> ----- ----- 5.~ 17. (현행과 같음)
제59조(한시정원) ① ~ ③ (생략) <u>④ 에너지 분야 등의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2월 29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, 별표 6의 정원 중 1명(5급 1명)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.</u> ⑤ (생략)	제59조(한시정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⑤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2]

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(제54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,013</u>	<u>1,018</u>	+5
·	·	·	
·	·	·	
별정직 계	<u>8</u>	<u>7</u>	-1
·	·	·	
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	<u>7</u>	<u>6</u>	-1
일반직 계	<u>1,002</u>	<u>1,008</u>	+6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973</u>	<u>979</u>	+6
·	·	·	

[별표 3]

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55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2,538</u>	<u>2,542</u>	+4
일반직 계	<u>2,538</u>	<u>2,542</u>	+4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2,529</u>	<u>2,533</u>	+4
·	·	·	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50